

한방 칼럼

탈모 이야기 1

탈모는 비정상적으로 머리털이 많이 빠져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 머리 숱이 적어지거나, 부분적으로 많이 빠져 대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탈모로 인하여 야기되는 상태를 탈모증이라 한다

탈모는 원인에 따라 완전히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므로, 제대로 원인을 분석한 후 치료를 해야만 한다. 탈모의 원인은 땅이 건조해서 생기는 탈모도 있지만, 과도하게 습해서 뿌리째 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손바닥, 발바닥, 입술, 생식기 등을 제외한 사람의 몸에는 약 1백만 가닥의 털이 있다. 그중 머리카락은 가장 많은 숫자와 진한 색깔을 자랑한다. 유럽인이 약 8만 가닥, 동양인이 약 10만 가닥을 갖고 있는 머리카락은 최고 1.5~2m까지 자랄 만큼 놀라운 성장력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우아함을 선사하는 반면 과도한 탈모와 이른 흰머리로 근심걱정을 안겨주기까지 하는 머리카락의 수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숱이 적다고 하는 사람이 약 6~7만 가닥, 많다고 하는 사람이 13~14만 가닥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 빈도수는 cm² 당 약 500가닥 내외이며, 한 달에 1.3~2cm 가량 자라고, 남자보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자란다. 특히 머리카락은 겨드랑이와 생식기 부위의 털이 최고 5~6cm, 눈썹·코털·귀속 솜털이 1cm 가량 자라는데 비해 최고 1.5~2m까지 자라며, 하루에 약 0.3~0.4mm, 1달에 약 1cm 정도 성장한다.

한 번 생겨난 머리카락은 성장기-퇴행기-휴지기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머리카락의 약 90%가 성장기 모발로 5년

가량이 이 기간에 해당하며, 휴지기는 3개월, 퇴행기는 3주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머리카락이 태어나고 오래된 머리카락은 빠져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하루 평균 30~100가닥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평소 50~6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한 것처럼 새로 생기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더 많으면 탈모증일 가능성이 높다. 탈모증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가닥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 경우를 말한다.

털뿌리에 해당하는 모근은 피부, 즉 두피 아래에 있으며 모낭과 맞닿아 있다. 아래 부위가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모낭은 깊고 실같이 내려져서 머리카락의 형태를 갖추게 한다. 모낭과 닿아있는 모근은 멜라닌과 딱딱한 케라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곳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면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마는데, 흰머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열쇠를 모근이 쥐고 있는 셈이다. 또 머리카락의 밑뿌리는 중심부에 '모유두'라는 것을 갖고 있다. 이곳으로 영양을 담당하는 신경, 혈관과 통하면서 머리카락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데,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베엘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시민권자 의붓자녀의 영주권 신청



한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인 경우, 영주권 초청을 받는 사람이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도 이민 초청이 되는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쿼터로 인해 순위가 정해져 있는 다른 가족 초청과 달리 영주권 문호가 항상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서류 미비로 불법체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입국의 경우는 601(a)라는 면제 신청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의붓자녀가 시민권자 의붓부모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법 상으로 의붓자녀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1) 의붓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자여야 합니다.
- 2) 의붓자녀의 친부모가 시민권자의 붓부모와 그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7세의 미혼 자녀를 둔 남성이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 현재 자녀가 17세이고 미혼이므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므로 또 2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17세 미혼 의붓자녀는 시민권자 여성의 자녀로 간주되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재혼을 통한 의붓자녀 영주권 신청은 서류상으로 가족 관계 결혼 날짜 등을 잘 증명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수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18세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의붓 부모가 아니고 앞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영주권자 친부모를 통해서 의붓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